

6-6.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II (2505)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에 아래에 열거한 특별약관(이하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의 제2조(공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지급사유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I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II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II)(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II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II)(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II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VII(중상해보장확대)(비탐승중 II)(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3천만원초과, 7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 II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 III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 이론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특별약관
- 이론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특별약관
- 이론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 특별약관
- 이론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I(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특별약관

주) 위 특별약관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2조 (공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공탁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한도 금액(이하 "보장한도 금액" 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보장한도 금액의 70%를 한도로 공탁금액의 100%이내에서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잔여 공탁금은 보장한도 금액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2호에 의해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제2호에 의해 공탁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 요청에 따라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금 확인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공탁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발급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5. 제4호에 따른 확인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제4호에 따른 회사의 서류제출 요청, 관공서조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2호에 의해 수령한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 (가지급 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가지급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가지급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가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을 따릅니다.